



Korean Tax Newsletter

4 September 2026

CONTENTS

세법개정

- 2026 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2026 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세무동향

- 국세청, 2026 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예규판례

○ 법원

-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한 사건

○ 조세심판원

- 피합병법인(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경과)의 자산비율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13 조 제 2 항에 따른 종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거래처와의 합의에 따라 감액한 매출채권의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여부

○ 재정경제부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정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의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해당 여부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에 따른 감액조정 후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이후 국외특수관계인 주식 양도 시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 행정안전부

- 대도시로 전입하는 법인이 그 전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 13 조 제 2 항에 따른 종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

- 연결집단 내의 연결자법인 간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공제한도

- 해외모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의 지급비용을 내국법인이 보전한 경우 그 지급비용 보전액의 내국법인 손금산입 대상 여부
- 구독회원 배달비 할인액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한 경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 '26.2.27. 개정된 조특령§26 의 8㉔(1) 후단(청년 간주규정) 적용 시 2024 년 근로계약 체결한 직원의 청년 여부 판단

세법개정

2026 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정부는 지난 8.3.(월) 「2026 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1 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8.27.(목) 차관회의를 거쳐 9.1.(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의결된 11 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3.(목)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정사항

 [보도자료\(Link\)](#)

- **ISA 개편**(조특법 §91 조의 18)
 - (ISA 계약기간, 납입한도, 일몰기한) 현행 유지
 - <수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지원
- **생산적금융 ISA 신설**(조특법 §91 조의 29 신설)
 - <생산적금융 ISA 신설 및 지원 확대>
 - (계약기간) 최소 3 년,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현행 일반 ISA 와 동일)
 - (납입한도) 연 2 천만원, 총 2 억원,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현행 일반 ISA 와 동일)
 - (일몰기한) 없음(현행 일반 ISA 와 동일)
 - (특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청년형 ISA) 일정 소득 이하 청년 가입자에게 납입금 10% 소득공제 추가 지원(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가능)
 - <수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중부법 §8①)
 - <비거주시 기본공제금액 조정>
 - (비거주 1 세대 1 주택자) 12 억원
 -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부부 각각 6 억원
 - * 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수정이유> 1 세대 1 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조정
-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중부법 §10·§15)
 -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 현행 유지>
 - 세 부담 상한 150%
 - <수정이유>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률 조정
-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기간 조정**(조특법 §145)
 - <환류기간 조정>
 - (환류기간) 지방 이전, 특구 입주·창업·사업장 신설 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를 개시한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의 마지막 과세연도까지
 - *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환류액) 감면세액(농특세 제외)의 30%
 - <수정이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전 투자하는 과세연도부터 환류기간에 포함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조정**(소득법 §129)
 - <현행세율 유지 대상 범위 조정>

-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 세율 인하) 3% ⇒ 2%
- (현행세율 유지 대상) 간편장부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은 현행세율(3%) 유지

〈수정이유〉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적용범위 합리화

○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 확대(조특법 §105①, ③)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대상 확대〉

- [(신규건설) 민자사업] ‘26.12.31. 이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분
- [(신규건설) 재정사업] ‘26.12.31. 이전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으로서 ‘27.12.31. 이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분

〈수정이유〉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026 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8.26.(수)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 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별제한법」으로, 개정 사항은 입법예고(8.27. ~ 9.23.),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10 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6 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지방세제 개편안 바로가기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안 법§46)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 대상자 범위 확대〉

- (대상자 범위 확대)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추가
- (요건) 조합원 1 명과 특수관계인이 ① 지분율 합계 50% 초과 & ② 손익분배비율 합계 50% 초과
- (한도) 부족금액에 과점조합원의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산출금액

〈개정이유〉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자 범위에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여 과세 형평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 세무조사 거부·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안 법§108)

〈세무조사 거부·기피 등 비협조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

- (과태료 금액 상한 인상) 500 만원 이하 ⇒ 5,000 만원 이하
-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과태료 금액		
1 회 위반	2 회 위반	3 회 이상 위반
2 천만원	3 천만원	5 천만원

〈개정이유〉 세무조사 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인상하여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세 세무조사 실효성 제고

○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안 법§108 의 3, §147)

〈세무조사 비협조 납세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와 중복 금지
- *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추가(법§147 개정)
- 부과 전 자료 제출 이행기한 최소 30 일 부여
- 전년도 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1 일당 300 만원 이내 부과
- 부과액의 50% 이내 감경·면제 가능
- 부과 기준·징수 방법 등 시행령에 위임규정 신설(영§67 의 2, [별표 4])

전년도 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1 일당 부과금액
2,000 억 미만	100 만원
2,000 억 이상 ~ 5,000 억 미만	200 만원
5,000 억 이상	300 만원

〈개정이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회피 방지 및 지방세 세무조사 실효성 제고

■ 지방세법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안 법§9⑦, §13⑤, §20①)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확대〉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확대)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이 속한 말일부터 9 개월 이내

〈개정이유〉 상속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 완화 필요

○ CR 리츠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종과제외 연장(영 §28 의 2 제 16 호)

〈CR 리츠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매입시 종과제외 일몰 연장〉

- (종과제외 기간 1 년 연장) 2024. 3. 28. ~ 2027. 12. 31.

〈개정이유〉 CR 리츠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종과제외 연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주택 경기 활성화 지원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종과제외 등 연장(영 §28 의 2 17 호 등)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종과제외 등 연장〉

* 사용검사·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

- ('26.1.1.~'26.12.31.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매입한 경우) 종과 제외 기간 1 년 연장: ~'27.12.31., 주택 수 제외 효과 기간 1 년 연장: ~'28.12.31.

* 전용면적 85 ㎡ & 취득가격 6 억원 이하

- ('24.1.10.~'25.12.31.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매입한 경우) 주택 수 제외 효과 기간 1 년 연장: ~'28.12.31.

〈개정이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종과제외 등 연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

○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주택 종과 및 주택 수 제외 일몰 연장(영 §28 의 2 18 호)

〈인구감소지역 민감임대주택 종과 및 주택 수 제외 일몰 연장〉

- (취득기간) 1 년 연장('26.1.1. ~ '27.12.3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주택 종과 및 주택 수 제외 일몰연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 감소지역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

○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법 개선(안 법§83, 영§84)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방법 개선(원칙: 부과징수, 선택: 신고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세액을 결정하여 8 월 16 일부터 8 월 31 일까지 부과·징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고지서를 납부 기간 개시 5 일 전까지 발급
- 신고납부 방법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8 월 16 일부터 8 월 31 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부과·징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함

〈개정이유〉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신고납부에서 보통징수로 전환하여 납세자의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과세의 정확성을 확보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 상향(안 법§103 의 31)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

- (세율 상향) 1% ⇒ 2%

〈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

○ 연결법인 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안 법§103 의 34)

〈과세표준 공제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

- (법)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
- (영) 연결법인의 차감액 계산 및 이월 방법 등 규정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

* 「법인세법」 제 57 조의 2

〈개정이유〉 연결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 **법인 보유 토지에 대한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안 법§120 등)

〈법인 소유 토지는 이용현황 변동신고 의무 개별 규정〉

- 분리과세, 별도합산 대상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하도록 함(대상 확대 및 강행규정으로 상향 입법)
- 미신고시 과표 10%를 가산(개인 제외)하여 직권등재

〈개정이유〉 법인 보유 토지의 이용현황 변동을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부여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 인정기준 강화**(안 영§101①)

〈법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 부속토지 인정기준 강화〉

- (법인) 건축물 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100 분의 5 에 미달하는 경우* 별도합산 배제
- *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별도합산 적용

〈개정이유〉 종합합산과세 회피를 방지하고, 토지의 실질적 이용에 따른 과세형평 제고

○ **공장용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 강화**(안 영§102①)

〈실제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분리과세 제외〉

- 실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는 분리과세 제외

〈개정이유〉 장기간 미사용 토지에 대한 세제지원을 방지하고 과세형평 제고

○ **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간 신설**(안 영§102⑦)

〈개발사업용 토지 등의 분리과세 적용 기간 한도 설정〉

- 개발사업(주택·산단)용 및 산업단지조성공사용 토지: 10 년
- 주택건설사업용 토지: 5 년
-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은 각각 3 년 추가 인정
-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연장

〈개정이유〉 장기 미착공·중단 사업의 장기간 세제혜택을 방지,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유도

○ **분리과세대상 토지 일몰기한 신설**(안 영§102⑦,⑧)

〈분리과세대상 토지 일몰기한 설정〉

- 기존 분리과세대상 토지도 성격에 따라 유형화하여 일몰을 설정하고 주기적 점검

〈개정이유〉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세제지원의 합리성과 과세형평을 제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사유 정비**(안 법§4②)

〈조례감면 불가 사유 구체화〉

- 지방자치단체 주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및 부동산 취득·보유에 관한 과세정책 등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개정이유〉 지방정부 내 주민 간 또는 지방정부 간 과세형평 침해, 타 지방정부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조례감면 불가 사유 구체화

○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안 법§31②)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

- 도정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실제로 입주 사실이 있어도 최초로 유상거래로 취득 시 취득세 감면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추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 **공공주택사업자 신축매입약정 부동산에 대한 감면 확대**(안 법§31 의 5)

〈공공주택사업자의 신축매입약정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확대〉

- (감면율) 취득세: 70%(~'27 년), 50%(~'28 년), 15%(~'29 년)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주택 건축 활성화 필요,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확대를 유도하여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도모

○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대수선에 대한 감면 신설**(안 법§31 의 6)

〈준주택 용도변경에 따른 대수선 취득세 면제〉

- (감면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수선을 통해 기숙사·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감면율) 취득세 면제
- (일몰기한) '27.12.31.까지

〈**개정이유**〉 유희공간인 비주택(근생 등)을 주거용 시설인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단기적인 공급 효과 및 전·월세 시장 안정 도모

○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33 의 3)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감면(사업주체) 일몰 연장〉

- (감면대상) 신축하여 '24.1.10.부터 '27.12.31.까지 취득하는 아파트
- (감면요건) ①준공 후 미분양, ②수도권 외 지역, ③전용면적 85 ㎡ 이하, 취득가액 3 억원 이하, ④'27.12.31.까지 임대차계약 체결 및 2 년 이상 임대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감면(수분양자) 일몰 연장 및 재설계〉

- (감면한도 신설) 150 만원 (법 75 만원 + 조례 75 만원)
- (일몰기한) '27.12.31.
- (추징사유 신설) 취득일로부터 3 년 이내 매각·증여

〈**개정이유**〉 사업주체 및 개인이 취득하는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지원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 §58)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사업시행자 부동산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취득세 15%~50% 감면(수도권 15%, 비수도권 35%, 인구감소지역 50%)
- 재산세 5 년간 15%~75% 감면(수도권 15%, 비수도권 60%, 인구감소지역 75%)
- (일몰기한) 2029.12.31.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부동산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취득세 35%~60% 감면(수도권 35%,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 60%)
- 재산세 5 년간 35%~75% 감면(수도권 35%, 비수도권 60%, 인구감소지역 75%)
- (일몰기한) 2029.12.31.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증축 건축물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취득세 35%~60% 감면(수도권 35%,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 60%)

- 재산세 3년간 35%~75% 감면(수도권 35, 비수도권 60%, 인구감소지역 75%)
- (일몰기한) 2029.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입주환경 개선을 통한 벤처육성 및 신기술창업 촉진 등 국가 주요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 지원 필요성 인정. 다만, 벤처기업직접시설 수도권 편중현상에 따라 지역별 감면율을 차등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

○ **재개발조합이 취득하는 현금청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안 법874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확대**〉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설: 취득세 면제(~27년), 취득세 75%(~28년), 취득세 50%(~29년)

*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보유한 종전 자산

- 공급대책 발표일('26.8.13.)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에 한정
- (추징사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미착공

〈**개정이유**〉 재개발사업에 대한 신속 착공 유도하여 부동산 공급 확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안 법 879 조의 2)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

- 선정일부터 4년 이내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축소·유지
-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업종*을 영위할 것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기준 동일
- (추징 요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청산·양도 또는 축소를 조건으로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만 적용)
- (일몰기한) 2029.12.31.

〈**개정이유**〉 해외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법 880 조의 2)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

- 특구 內 '공장 ⇒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설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 (일몰기한) 2029.12.31.

〈**개정이유**〉 감면대상 건축물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제조업 외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도모

세무동향

국세청,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국세청은 8.12.(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6.8.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든든한 국가재정으로 뒷받침
 - 하반기 주요세목 성실신고 지원 확대와 치밀한 세원관리, 체납관리단 운영 및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중장기 재정기반을 탄탄히 구축
 - 미리·모두채움 확대*,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소득세 신고지원 서비스** 추진,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세금신고 안내·교육 서비스」 강화 등 신고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해외신탁 미신고 등 탈루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역량을 집중
 - * (예) 물건소재지·양도일 등 양도세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를 입주권·분양권 등 기타자산까지 확대
 - ** 납세자 동의하에 국세청이 작성한 모두채움 신고서로 자동 신고되는 ‘모두채움 자동신고제’ 등 개발(‘27년~)
-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의 도약,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
 - ‘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목표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내 통과를 위해 관련 입법절차를 충실히 지원
 - * 체납된 국세외수입 징수권한 국세청 일원화, 과세정보 활용, 효율적 징수수단 등 규정
 - 국민 접점이 가장 넓은 납세서비스 분야를 시작으로 국세행정 쏠 분야에 AI 전환을 확대하여 ‘공공 AI 선도모델’을 구현
-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
 - 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장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
 - * (부가세) 교환율 피해, 창업청년 등 103 만명, (법인세) 교환율·고유가 피해 등 4 만개 법인
 -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해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세정차원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

예규판례

[법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한 사건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 두 30542 판결, 상고기각)

■ 쟁점

1. 당초 처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허용)
2.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2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63 조의 13 제 2 항 각 호에 명시된 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2 제 1 항이 규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 이후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원칙적 위법)
3.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등이 유보되어야 하는 시한(=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결정' 자체가 이루어진 시점)

■ 사안

세무조사 후 이루어진 당초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뒤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한 후 과세처분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쟁점 1〉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임(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 두 49228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 두 511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는 과세처분 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전구제절차이기는 하지만,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종전 결정 등에 오류나 누락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과세권의 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함. 위와 같은 경우에 과세관청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을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등 공평과세원칙 및 조세정의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음

〈쟁점 2〉 (...) 조사청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2 제 1 항 소정의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이 지난 뒤에 이루어져, 그 자체는 위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기는 함. 그러나 당초 처분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취소된 것은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서 사전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와 관련하여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음. 이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기에 이른 것이고, 원고는 그 통지를 수령한 후 자발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음.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비록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2 제 1 항 소정의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절차적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재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만들어 재처분, 즉 이 사건 처분을 또 다시 취소하고 과

세관청으로 하여금 새로이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원고에게 다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임 (...)

〈쟁점 3〉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5 제 4 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 부터 30 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63 조의 15 제 4 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 4 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함. 다만, 법 제 81 조의 15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 8 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5 제 4 항의 문언 자체에서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결정’과 이러한 결정의 ‘통지’라는 용어를 준별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63 조의 15 제 4 항 역시 위 국세기본법 조항의 문언에 맞추어 단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등이 유보되어야 하는 시한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결정’ 자체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일 뿐, ‘결정’이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통지되거나 송달될 때까지라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피합병법인(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 년 경과)의 자산비율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13 조 제 2 항에 따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 지 1255, 2026.6.9., 취소)

■ 쟁점

대도시 내 설립 후 5 년이 경과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비율만큼 「지방세법」 제 13 조 제 2 항에 따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안

주식회사 AAA 그룹(이하 “AAA 그룹”)은 2021.4.16.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000 으로, 목적사업을 의약품 개발, 제조, 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1.9.9. 주식회사 AAA 코리아(이하 “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이하 ‘이 건 합병’)한 후, 2022.4.1. 상호는 청구법인으로, 2023.4.11.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00 으로 변경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 2024.5.24. 서울특별시 구로구 000 토지 32,787.4 ㎡(이하 “이 건 부동산”)를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000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 13 조 제 2 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 원을 신고·납부하였음. 청구법인은 2024.11.15. 이 건 합병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 27 조 제 5 항(이하 “쟁점규정”)에 따른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된 경우로 이 건 부동산 중 피합병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피합병법인이 경기도 과천시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과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대도시로 분류되므로 피합병법인은 여전히 대도시 내 법인으로서 설립 후 5 년이 경과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처분청은 쟁점규정이 합병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에 한정된다는 의견이나, 쟁점규정은 대도시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해온 기존 기업의 조직 재편에 대해 단지 형식적인 법인 구조 변경이 있었다는 이유로 중과세 부담을 부과하지 않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기존법인과 합병 이후 존속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존속법인이 신설 후 5 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이에 따라 합병 후 존속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법인의 자산비율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거래처와의 합의에 따라 감액한 매출채권의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여부

(조심 2025 광 2777, 2026.6.10., 경정)

■ 쟁점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미국법인인 A(이하 “쟁점미국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음.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포기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2022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 매출채권에서 감액한 금액(비용)들에 대하여 실제 지출 사실 및 매출채권 감액이 단가 조정에 따른 것인지 등을 재조사 하라’고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조사 당시 또는 당초 심판청구 시 이미 제출되었거나 그 지출사실 및 쟁점매출채권 감액이 단가조정으로 인한 것인지여부가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법인세법」 제 19 조 제 2 항에 따르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 작성한 쟁점합의서(Write off Agreement) 및 쟁점미국법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등에 따르면, 코로나 19 가 성행하던 당시 청구법인의 미국 내 수출이 쟁점미국법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당초 개당 USD 000 로 판매하기로 계약한 제품이 개당 USD 000~USD 000 에 판매되는 중국산 등의 제품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미판매제품에 대한 반품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가조정을 요구하는 쟁점미국법인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2021.12.21. 반품불가조건의 단가조정(USD 000→ USD 000)을 통하여 미판매제품에 대한 반품 위험을 회피함으로써 오히려 매출환입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코로나 19 가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국내 납품가격도 2021.5.27. 개당 000 원에서 2021.12.31. 현재 개당 000 원으로 6개월 동안 약 3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의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쟁점매출채권 중 손상 및 판매불가제품에 대한 청구법인 부담분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에서 감액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 중 단가조정금액 USD 000 와 손상 및 판매불가제품 USD 000 를 청구법인의 사업(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외 국제특허변호사 비용, ITC 피고 변호사비용, FDA 수수료, 000 인증실험·인증비용, 처분비용, 불량제품 검사 인건비 합계 USD 000 는 쟁점미국법인이 선지급하였다는 내역이나 산정 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재정경제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정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의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487, 2026.6.8.)

■ 질의

甲(양도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甲의 특수 관계자(기타주주)가 보유하는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甲이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인 2017 년 종료일 현재 甲의 부모(乙, 丙)는 A 법인(코스피 상장) 주식을 0.12%(시가총액 27 억원)을 보유함

성명	관계	A 법인 주식수	지분율	시가	비고
甲	자	0	0	0	
乙	부	100,000	0.10%	18 억원	소득령 157 조 4 항 2 호 (시가총액 기준) ⇒ 대주주 요건 충족함
丙	모	50,000	0.05%	9 억원	
합계		150,000	0.15%	27 억원	

- 甲은 A 법인의 주식 10,000 주(0.01%)를 취득하여 2018.3.31. 이전 양도함

회신

주권상장법인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舊 소득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 28637 호로 개정된 것) 제 157 조 제 4 항 제 1 호에 따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동 시행령 제 157 조 제 4 항 제 2 호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정경제부]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에 따른 감액조정 후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이후 국외특수관계인 주식 양도 시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503, 2026.7.13.)

■ 질의

국외특수관계인(중국 자회사)과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타결을 통하여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5 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감액조정(기타)하였으나, 동 소득조정에 대한 현금 정산(반환)은 없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 매도하는 경우 미반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3 조 제 2 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미반환금액은 「법인세법」 제 18 조 제 2 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해당 내국법인이 그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 양도 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행정안전부] 대도시로 전입하는 법인이 그 전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 13 조 제 2 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646, 2026.5.21.)

■ 질의

대도시로 전입하는 법인이 그 전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 13 조 제 2 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1 호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 11 조제 1 항의 표준세율의 100 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 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일반적인 법인의 부동산 취득보다 높은 세 부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27 조제 3 항에서는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에 따른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는 법인이 본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 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판단됨(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 두 20984 판결 참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 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을 상시 수행하기 위해 기업 조직 내부에 설치한 부설 연구기관인 점, 이러한 기업부설연구소는 해당 기업의 사업 목적과 관련된 원천 기술을 연구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그 본점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점, 해당 기업의 인력과 설비 등이 투입되어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단순히 임대용 부동산 등과 같이 본점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부설연구소는 그 본점의 사업 활동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 13 조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 조 제 3 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는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는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연결집단 내의 연결자법인 간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공제한도

(서면-2024-법규법인-1118, 2026.3.24.)

■ 질의

연결자법인 간 적격합병한 경우로서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발생한 결손금」을 구분경리 없이 합병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1 안) 합병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공제
- (2 안) 합병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도로 공제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환경신기술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 법인 주식을 100% 보유중으로 A 법인은 ‘20.12 월 B 법인을 설립하여, B 법인은 질의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21 사업연도부터 질의법인과 B·C 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후, 같은 해 질의법인이 B·C 법인을 흡수합병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 간에 적격합병을 한 경우로서 연결 모법인이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2021.12.21. 법률 제 1859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6 조의 13 제 3 항제 1 호에 따라 구분경리 없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합병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국세청] 해외모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 의 지급비용을 내국법인이 보전한 경우 그 지급비용 보전액의 내국법인 손금산입 대상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1097, 2026.7.23.)

■ 질의

해외모법인이 100% 지분 소유한 내국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그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기초로 제한조건부 주식단위(Restricted Stock Unit, 이하 '쟁점 RSU')를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쟁점 RSU에 따라 내국법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해외모법인의 주식보상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지급비용(이하 '쟁점 RSU 지급비용')을 내국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보전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그 보전한 금액(이하 '쟁점 RSU 지급보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은 상품의 판매 및 중개를 주요 영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미국법인인 ○○○○○○, Inc.(이하 '본건 해외모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완전자회사이며, 본건 해외모법인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발행주식이 상장된 상장회사임
- 본건 해외모법인은 2021.2.10.부터 신청법인 임직원의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사전약정된 가득시점에 해외모법인 주식을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제도(=쟁점 RSU)를 시행하였는데, 2025.○○.○○. 신청법인과 본건 해외모법인은, 2026.1.1.부터 쟁점 RSU 에 따라 지급되는 본건 해외모법인의 주식보상에 대하여 신청법인이 본건 해외모법인에게 쟁점 RSU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약정 체결함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RSU(Restricted Stock Unit)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의 각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주식 지급의 경우로서 같은 조 제 3 항 제 1 호 적용 제외),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한 해외모법인에 국내자회사가 보전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9 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국세청] 구독회원 배달비 할인액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한 경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23-부가-4125, 2026.7.24.)

■ 질의

신청인이 ○○수수료에서 차감·정산하는 방식으로 멤버십 가입 회원에게 제공한 ‘VD 배달료 할인액’이 부가세 법상 매출에누리로 보아, 해당 수수료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신청인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앱 이용자(이하 ‘구매회원’)와 음식점(이하 ‘판매회원’)간 음식 주문·판매 중개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함
- 신청인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판매회원으로부터 음식가격 대비 일정 비율의 서비스 이용료(이하 ‘○○서비스 수수료’)를 수취함
- 음식 배달방식은 Vendor Delivery[VD, 판매회원(음식점)이 선택한 제 3 자 배달업체가 음식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신청인은 구매회원으로부터 배달료를 수취하여 판매회원에게 전달] 및 Own Delivery(OD)의 2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신청인은 구매회원이 월 0,000 원(이하 ‘구독료’)을 지불하면 당월 주문 중 건당 최소주문금액(00,000 원) 이상 주문에 대해 배달료(배달형태 불문)를 전액 할인받을 수 있는 멤버십제도를 운영함
- 신청인은 멤버십 이용자에게 이용기간 동안 앱 내 안내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신청법인이 멤버십 이용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구독료 수취 시점에 부가가치세법 제 36 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 멤버십에 가입한 구매회원들에 대한 배달료 할인액은 신청법인이 전액 부담, 즉 구매회원은 배달료를 제외한 음식 대금만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VD 배달료 상당액을 신청법인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취하는 ○○서비스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

회신

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주문·판매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로서, 판매회원과 의 이용약관에 따라 판매회원에 청구할 수수료에서 구매회원 중 구독회원 주문 건에 대한 배달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정산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용역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5 항 제 1 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질의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국세청] '26.2.27. 개정된 조특령\$26 의 8④(1) 후단(청년 간주규정) 적용 시 2024년 근로계약 체결한 직원의 청년 여부 판단

(사전-2026-법규법인-0729, 2026.7.30.)

■ 질의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조특법\$29 의 8 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024 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 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도 '26.2.27. 개정된 조특령\$26 의 8④(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조특법\$29 의 8 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함
- '24.2.19.에 입사한 A 직원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 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상시근로자였으나, '25.12 월 이후 34 세를 초과하게 되었음

회신

내국법인이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8 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2024 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2.27. 대통령령 제 36127 호로 개정된 것) 제 26 조의 8 제 4 항 제 1 호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Tax & Legal Leader

+82 (2) 6676-2434

jikim@deloitte.com

김경조 Partner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